그라운드골프 지도자 자격 관리·운영 규정

제정 2008. 10. 09.
개정 2014. 01. 06.
개정 2016. 06. 23.
개정 2017. 08. 21.
개정 2019. 08. 26.

제1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(이하 '협회'라 한다)의 지도자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, 그라운드골프 지도자 자격 검정 및 관리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지도자 구분) 그라운드골프 이념에 찬동하고 그라운드골프를 통하여 생활스포츠의 진흥과 육성에 기여하는 회원으로서, 협회가 인정하는 각급 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1,2,3 급으로 구분한다.

① 1급 그라운드골프 지도자(master)
② 2급 그라운드골프 지도자(gold)
③ 3급 그라운드골프 지도자(silver)

제 3 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협회의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(시험위원 등)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(수험자 등)에게 적용한다.

제 2 장 업무구분

제 4 조(검정업무의 구분) ① 협회는 그라운드골프 지도자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.시행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

2.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검정업무의 기획,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4. 시험위원의 위촉.활용에 관한 사항
5.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.관리 및 인쇄.운송에 관한 사항
6.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
7.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발급.관리에 관한 사항
8.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
9.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

② 대한협회 사무처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수험원서 교부.접수, 수험 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
2.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검정집행업무(시험장 준비, 시험위원 배치, 시험시행 등)와 관련된 사항
4. 실기시험 답안의 현지채점에 관한 사항
5.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
6.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
7.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
8.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
9.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

제 3 장 검정기준 및 방법

제 5 조(자격의 취득) 그라운드골프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자격종목) 자격의 종목은 3개 종목으로 종목명은 1급, 2급, 3급이다.

제 7 조(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) ① 동 자격증은 그라운드골프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그라운드골프 분야의 지도 및 보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자격명	등급	등급별 직무내용
그라운드골프지도자	1급 (master)	시·군·구와 시·도를 중심으로 시·군·구와 시·도의 각종 사업계획 및 조직의 육성 강화 업무를 수행한다.
	2급 (gold)	시·군·구를 중심으로 클럽을 지도하고, 각종 사업계획과 조직의 육성 강화 업무를 수행한다.
	3급 (silver)	거주하는 지역(읍·면·동)을 중심으로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의 이념을 구현하고, 그라운드골프의 보급 및 진흥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8 조(검정의 기준)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자격종목	등급	검정기준
그라운드골프지도자	1급 (master)	전문가 수준의 뛰어난그라운드골프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라운드골프 교육자 또는 사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
	2급 (gold)	준전문가 수준의 그라운드골프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라운드골프 교육자 또는 사무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
	3급 (silver)	그라운드골프 동호인으로써 뛰어난 그라운드골프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, 그라운드골프 활용수준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라운드골프 교육자 또는 사무를 수행 할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

제 9 조(검정의 방법) ① 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.

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시험형태는 4지선다 객관식 및 단답식,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.
2. 시험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그라운드골프 경기 규칙
- 그라운드골프 기본 기술
- 타수기록카드 작성법
- 지도자의 임무와 역할

제10조(응시자격) ①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

등급	응시자격
1급	2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고, 시·도 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2급	3급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고, 시·도 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3급	1년 이상 그라운드골프 협회의 회원으로 존속하면서 시·군·구 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
제11조(합격결정 기준)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
4 장 수험원서

제12조(검정안내) ① 협회는 검정의 종목, 수험자격, 제출서류, 검정방법, 시험과목, 검정일시,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.

제13조(수험원서 등)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원서접수) ① 원서는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원서는 각 시·도 협회를 통한 단체접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체육지도사의 경우에는 개별 접수할 수 있다.

③ 원서는 방문·이메일·우편·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,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.

④ 수험표는 각 시·도 협회를 통하여 교부한다. 단, 제육지도사로서 개별 접수자는 개별 교부할 수 있다.

제15조(수험번호 부여)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한다.

제16조(수수료)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단,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검정일 2일 전까지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.

③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.

5 장 검정시행

제17조(검정시행 총괄) 시험장 책임관리위원은 시험 시행 전에 시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,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,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,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.

제18조(시험위원 기술회의)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필기시험에 있어서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, 답안지 작성방법,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.

제19조(수험자 교육)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, 시험시간, 시험진행요령,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수험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
제20조(수험자 확인)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회원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21조(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)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,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,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.

제22조(부정행위자 처리)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3년 동안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제23조(답안지)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,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,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4조(문제지 회수)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.회수하여야 한다.

제 6 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·뺏지 교부

제25조(합격자 공고) 협회장은 검정종료 후 30일 이내에 각 시·도 협회를 통하여 합격자를 공고한다.

제26조(자격증 교부) ① 합격자에게는 그라운드골프 지도자 자격증을 교부한다.

제27조(뺏지 교부) ① 합격자에게는 그라운드골프 지도자 뺏지를 교부한다.
② 교부할 뺏지의 모형과 규격은 (별표2)와 같다.

제28조(지도자 자격 상실) 그라운드골프지도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① 협회의 회원에서 탈퇴하였을 때
② 그라운드골프지도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조직의 지탄을 받을 때
③ 이유 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

④ 자격 상실한 회원의 자격부활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본 규칙은 2009년 2월 24일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본 규칙 시행 이전에 있었던 그라운드골프 강습회 수료증을 받은 자로써 협회비를 6개월이상 납부한 자는 3급 그라운드골프 지도자 강습회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4. 02. 11 개정)

제1조 본 규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

부 칙(2016. 6. 23 개정)

제1조 본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

부 칙(2019. 8. 26. 개정)

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취득한 1,2,3급 지도자 자격증은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(별표1)

1. 규격 : 18mm

2. 모형

구 분	1 급	2 급	3 급
명 칭	MASTER	GOLD	SILVER
태극무늬 바탕	주황색	노랑색(금색)	은 색
태극무늬 바탕 글자색	검은색	검은색	검은색
큰원 바탕	초록색 바탕 흰색 글씨	초록색 바탕 흰색 글씨	초록색 바탕 흰색 글씨
바깥 테두리	금 색	금 색	금 색
도 안			